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집 규정

[2024년 2월 28일 개정]

목 차

01.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1
02. 가맹단체 운영 규정	17
03. 가맹 및 탈퇴 규정	31
04. 관리단체 운영 규정	39
05. 지회 운영 규정	45
06.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53
07.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59
08.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67
09.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3
10.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9
11.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83
12.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89
13.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	93
14.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99

15. 대회개최 · 참가 보조금 지원 규정	109
16. 인사 규정	119
17. 복무 규정	143
18. 보수 규정	169
19. 회계 규정	197
20. 물품관리 규정	217
21. 여비 규정	237
22. 문서관리 규정	245
23.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55
24.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293
25. 차량운영 관리 규정	327
26. 실업팀 운영 규정	347
27. 기부금품 관리 규정	365

가맹 및 탈퇴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탈퇴 규정

제정 2014. 01. 16.

개정 2014. 05. 08.

개정 2022. 12. 1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6조 및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가맹단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종목별 경기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 또는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로서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장애인체육회 총회의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 받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3.>
3. “준 가맹단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총회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3.>
4. “인정단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총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3.>
5. “탈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에 의해 가맹을 승인받은 가맹단체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가맹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맹구분) ① 가맹단체는 가맹 및 준가맹 단체로 구분한다.

- ② 장애인체육회는 가맹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제5조의 가맹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6조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하여 준가맹 단체로 승인할 수 있다.
- ③ 장애인체육회는 준가맹 단체의 가맹에 대하여 준가맹 승인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하여야 재심의 할 수 있다.

제4조(가맹신청서류)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고자 하는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상정할 총회의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1. 가맹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

2. 단체연혁
3. 임원명단(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첨부)
4. 정관 또는 단체규약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
7.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8.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9. 가맹을 결의한 총회(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10. 중앙경기단체의 지부 인증서

제5조(가맹요건)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2. 세종특별자치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일 것
 3.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인종목이거나 각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가맹(체육)단체가 인정하고 승인을 받은 경기종목 일 것. 다만, 경기종목 및 체육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4.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 ② 상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장애인체육회가 가맹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 ③ 체육단체의 경우 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의절차) ① 가맹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의한다.

② 준가맹 경기단체 및 인정단체의 지정은 장애인체육회 총회 의결로써 승인한다. <개정 2022. 12. 13.>

제7조(제한사항)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준가맹 단체라 할지라도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하는 예산의 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본 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한 준가맹 단체는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 중 총회 파견권이 없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육회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제8조(탈퇴요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탈퇴하게 한다.

1. 가맹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

2. 제5조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가맹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장애인체육회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가맹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임원 또는 집행부 부재 및 임원의 권위와 지도력 결여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장애인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장애인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제9조(탈퇴신청) 가맹단체가 제8조제1호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신청서(별표 2호 서식)
2. 탈퇴를 결의한 총회(이사회) 회의록

부 칙(2014. 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접 수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가맹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대표자)	① 단 체 명		② 연 락 처		
	③ 소 재 지				
	④ 성 명 (한 자)	()	⑤ 주민등록 번 호		
	⑥ 주 소				
⑦ 설 립 연 월 일					
⑧ 설 립 목 적					
⑨ 회원 및 지부 현황		회원수	계 : (남 : , 여 :)	지 부	
⑩ 국제장애인과 체육기구 관계		명 칭		회 원 국 가입여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탈퇴규정 제4조, 제5조에 의거한 가맹 및 탈퇴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가맹을 신청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장 귀하					
<붙임 서류> 1. 단체 연혁 2. 임원명단(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첨부) 3. 정관 또는 단체규약 4.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5.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 6.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7. 수지결산서 및 수지에산서 8. 가맹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9. 중앙경기단체의 지부 인증서					

〔별표 제2호〕

접 수 일				
접수번호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탈퇴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단 체 명		② 연 락 처	
	③ 소 재 지			
	④ 성 명 (한 자)	()	⑤ 주민등록 번 호	
	⑥ 주 소			
⑦ 탈 퇴 사 유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탈퇴규정 제2조, 제8조에 의거하여 본 가맹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장 귀하				
붙임서류 1. 탈퇴를 결의한 총회(이사회) 회의록				

